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2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5.

발 의 자: 백종헌 · 서천호 · 김예지

김미애・박충권・정성국

김재섭 • 고동진 • 진종오

서명옥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,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.

각 평가제도는 인증·지정·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「의료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,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부재한 실정임.

이에 '평가통합정보시스템'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통합·연계 처리·기록·관리하여,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,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 고,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(안 제58조의12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12(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처리·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"평가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58조의12(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관한 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처리·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"평가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

현 행	개 정 안
	탁할 수 있다.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	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통합정
	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정보의
	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
	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